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3595

발의연월일: 2024. 9. 3.

발 의 자:김위상·김선교·임이자

김승수 · 박정하 · 박충권

송언석 · 신동욱 · 김종양

배현진 • 나경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법률 제 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행정 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생	제19조(폐쇄조치 등)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	정한 사항 외에 제1항에 따른
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는 「행정
주어야 한다.	기본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u> 따른다.</u>